

202.29호

행 정 명 령

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(COVID-19)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그러므로, 이제 Andrew M. Cuomo 뉴욕주 주지사 본인은 행정부법(Executive Law) 2-B조 29-a항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, 후속 지시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행정 명령 202.15, 202.16, 202.17, 202.18, 202.19, 202.20 및 202.21호에 따라 모든 법과 기타 지시의 중지 및 개정을 이로서 2020년 6월 7일 일요일까지 30일 동안 연장합니다.

또한, 본인은 본 행정 명령 일자부터 다음을 일시적으로 수정합니다.

- 민사 관행법 및 규칙(Civil Practice Law and Rules) 214-g항은, 해당 조항의 발효일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, 해당 조항에 따라 개시된 조치가 해당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1년 11개월 이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.

2020년 5월 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
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
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